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 8. 17 선고 2022가단55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1. 3.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3. 9. 접수 제25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C과 사이에 C이 D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을 15,000,000원의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C이 D조합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22. 1. 28. D조합에 C의 채무 13,215,121원(= 원금 12,850,000원 + 365,1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차전10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22. 2. 10. 'C은 원고에게 13,256,122원 및 그 중 13,215,121원에 대하여 2022. 2. 7.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22. 3.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던 전라남도 장흥군 E 임야 25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 3. 9. 접수 제2583호로 2021. 3. 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의 채무초과사실 및 사해의사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C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항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는지에 관한 선의 여부가 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거시한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5,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C이 위 매매대금을 다시 피고에게 반환하는 등 위 매매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가 아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F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와 C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C의 채무초과상태 등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1. 3. 1. 체결되었는데 원고의 C의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는 2022. 1. 28. 이루어졌던 바, C의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로서는 C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가 C의 채무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C의 채권자를 해하게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은 반복되었고,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가 C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악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요섭

별지